



# 서울교통공사

수신자 내부결재  
(경유)

제목 2018년 본사 업무용차량 자동차세 일괄 납부

1. 지방세법 제124조 ~ 제134조, 제149조 ~ 제154조와 관련입니다.
2.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년간의 세금을 6월과 12월에 각각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, 미리 일괄납부할 경우 세액공제(10%)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고자 합니다.

### 가.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내역

- 1) 납부금액 : 2,526,600원(이백오십이만육천육백원정)
- 2) 자동차세 선납공제액 : 223,106원(이십이만삼천일백육원)
- 3) 자동차세 연납고지 세부내역 : 붙임 1

나. 예산과목 : [판]일반운영/공공/세금과공과(자동차세)

다. 납부기한 : 2018.1.31.(수)

- 붙임 : 1. 2018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 내역 1부.  
2. 2018년 본사 업무용차량 자동차세 고지서 10부. 끝.

주임 박호진

부장 조공식

처장 01/23  
이권수

협조자

시행 총무처-1068 (2018.01.23.)

접수

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/http://www.seoulmetro.co.kr

전화 6311-9107 전송 / hjpark86@seoulmetro.co.kr / 대시민공개

부패 '0'의 공기업!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. 인사 이권청탁 배격